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제3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세 진)